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1294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현, 박종진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481,8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81,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481,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013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C은 2020. 12. 31.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E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은 2021. 2. 2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21. 7. 15. 공시송달을 통해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C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호124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피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중, 2021. 4. 27. 피고에게 2021. 3. 3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5,801,250원 상당의 군산시 F 임야 2,975㎡ 중 1/4 지분, 시가 121,002,83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 1,146,110원, G카드대금 593,000원, H카드대금 946,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약정금채무 11,445,368원,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채무 84,000,000원,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무 19,920,000원¹⁾ 등이 있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1. 12. 2. 주식회사 J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30,766,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설정일자	목적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16. 5. 25.	이 사건 부동산 중 30/189 지분	24,000,000원	C	주식회사 J
2	2018. 10. 4.	이 사건 부동산 중 45/189 지분	30,000,000원	C	주식회사 J
3	2020. 7. 9.	이 사건 부동산 전부	30,000,000원	C	주식회사 J

바. 한편 원고는 위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2022. 10.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3,259,059원을 배당받아 그중 3,051,616원을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207,443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여 원금 13,792,557원(= 14,000,000원 - 207,443원)이 남게 되었고, 여기에 2022. 10. 27.부터 2023. 3. 28.까지의 지연손해금 689,249원을 더하면 원고의 채권액은 합계 14,481,806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과 위 부동산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상당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C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9. 11. 20. C과 합의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합계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84,000,000원 중 30,766,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 14,481,806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 합계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인정한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14,481,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가액배상금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부동산목록

군산시 L 임야 36,694㎡ 중 189분의 75. 끝.

1)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45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청구금액으로 주장한
12,920,000원 + 2019. 12.부터 2021. 3.까지의 양육비 8,000,000원(= 16개월 × 500,000원) -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